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0-21
----------	---------

제출연월일 : 2020년 4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가족해체 및 1인가구 등의 증가로 고독사를 맞이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안 제4조)
- 다.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5조)
- 라. 구민에 대한 웰다잉 문화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2.5. ~ 2020.2.25.)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 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문화조성사업 수행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조례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근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보건소 의약과 과장 장진수

(담당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고아라 / ☎ 2600-5855)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정사유

-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가족해체 및 1인가구 등의 증가로 고독사를 맞이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안 제4조)
-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5조)
- 구민에 대한 웰다잉 문화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20 - 2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의약과	통보(조치)일		2020. 2. 19.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서울강서001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의약과	
	담당자명	고아라	전화번호 02-2600-585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2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약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입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2월 20일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의약과장 귀하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삭제 <2018. 3. 27.>

나. 삭제 <2018. 3. 27.>

다. 삭제 <2018. 3. 27.>

라. 삭제 <2018. 3. 27.>

마. 삭제 <2018. 3. 27.>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

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4.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의 결과 통보
5.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보관

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 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려는 등록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⑦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 결과 기록·보관 및 보고, 폐업 등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